

수원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75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

담당변호사 박정익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6. 2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0. 선고 2020가단2117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1.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 사이에 광주시 D 임야 16,661㎡ 중 10/16,66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9. 4. 23. 접수 제2564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25. G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받아 원고의 배우자 E가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피고 B에게 2018. 6. 25. 1,000만 원, 2018. 6. 26.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B는 위 2,000만 원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 B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피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한 고용촉진지원금 45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피고가 2019. 4. 24. 고용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아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고용지원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위 피고로부터 2016. 9. 29. 1,500만 원, 2017. 1. 6.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또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분의 송달로써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3,95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채권의 존재에 대한 판단

(1) 고용촉진지원금 4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5. 11.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인 원고를 피고 B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E는 피고 B로 하여금 원고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2016. 8. 12. 위 피고가 수령한 고용촉진지원금 4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 B는 2019. 4. 24.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원고를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로 하여금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수령한 고용촉진지원금 450만 원을 지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 E여서, 원고가 마치 위 피고의 근로자인 것처럼 며칠 동안 위 피고의 사무실로 출퇴근하였다거나,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이 신청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45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고용촉진지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016. 9. 29.자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을 제5,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6. 9. 29. 원고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는 위 2016. 9. 29.자 1,500만 원을 원고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17. 1. 6.자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대표이사 F은 2017. 1. 6. 위 피고의 직원 H에게 송금하였던 2,000만 원을 위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000만 원은 2016. 9. 29.자 대여금과는 달리 원고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 B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F에게 지급되었던 돈을 F이 H에게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F이 E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고 B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③ 설령 피고들의 주장을 원고가 일상가사대리권 책임에 기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선행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이 생활비 등 일상 가사의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 B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으면서 유상으로 거래한 것처럼 금융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2017. 1. 5. F에게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4,000만 원과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그 다음날 반환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상계의 의사표시 및 상계적상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던 2018. 6. 25.과 2018. 6. 26.에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8. 7. 23.과 2018. 8. 23.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18만 원을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차용 당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모순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2,000만 원과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9. 29.자 대여금채권 1,500만 원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의 성립 이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여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므로(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결국 양 채권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성립일인 2018. 6. 25. 및 2018. 6. 26.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2020. 8. 24.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위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5. 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4. 18.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4. 18.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 정하경, 판사 박선민